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제안요청서**

기술안전정책관
시 설 안 전 과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1
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III. 주요 과업내용	3
IV. 과업 수행지침	4
V. 보안 대책	9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2
VII. 업체 선정방법	14
VIII. 평가방법 및 기준	16
<제안관련 서식일람>	19

I. 연구용역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구체화, 처벌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중대재해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 의견표명 지속
- 사상사고 발생이나 각계의 요구에 따라 제도 시행('22.1.27)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 중인 상황
 - * (김영배의원, '21.6) 광주 철거현장사고 후 건설현장 인근 시민 사상사고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 (강민정·강은미의원, '22.1) 건설현장·버스차량 등 시민재해 적용범위 확대, 공무원 처벌 신설

□ 과업의 목적

- 제도 안착상황과 개정 소요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제정 취지가 구현되도록 운영 지원

2. 예산 : 50,000,000원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3) 충족하면 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해 결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Ⅲ. 주요 과업내용

1.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현황 및 통계, 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 법인·기관 현황 및 통계 분석
- 사업주·법인·기관 유형, 대상 시설물·교통수단 유형별로 빈발하는 사고형태 및 안전관리 취약요소 등을 분석하고 예방·개선대책 제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해 중앙부처·지자체의 관리·감독이나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 개선방안 제시
- 민간 사업주, 법인·기관 등에 법령 내용, 중대재해 예방정책, 사업주 지원사항 등을 교육·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적 방안 제시

2.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기존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의무를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령과의 연계 운영방안 제시
 - * 예) 국가안전대진단(연1회), 도로정비평가(도로시설안전) 등으로도 시설물 점검·평가를 실시 중으로, 실시주기·평가항목 등 개선을 통해 중대법 의무(연2회, 안전확보절차마련 등) 이행 제고 도모
-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재난예방 시스템, 안전정보 공개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주 등의 정보접근성·편의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민간·업계 관리·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컨설팅 등 강화방안 제시
- 언론 모니터링, 각계 간담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정 소요를 파악하고, 개정법률 운영 시 재해예방 효과, 영향 등 선제 분석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술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법령 운영 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수사기관 등의 협력·연계 체계를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의 기술연구·자문 역할 강화방안 제시

IV.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1) 본 지침에서 발주처를 “갑”,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칭한다.
- 2) 지침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4)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과업수행기준

-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중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갑”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 2) “갑”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3) “을”은 과업수행 중 연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갑”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 1)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등 의미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 1)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과업수행자가 “갑”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3) 본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 1)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지침 상에 누락

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1)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본 과업의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 시 “을”은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용역기관의 의무

- 1) “을”은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2) “을”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 특허권의 사용

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과 이를 원 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 1) “을”은 과업진행에 대한 “갑”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을”은 과업내용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2. 보고

가. “을”은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 세부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2)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3) 과업참여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4) 예정공정표
-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의견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 가.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을”은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을”은 최종보고서(안)을 준공일 14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필요한 경우 준공 후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 마. “을”은 착수 후 “갑”이 지정한 시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4.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가. 용역보고서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A4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다. 용역보고서 30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하여 용역회사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만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과업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할 경우에는 정부 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 '17.7.13) 중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첨부 1

예정공정표

내용	월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가. 세부연구계획 수립	■				
나. 중대재해 예방정책, 관련 제도 등 분석·검토, 자문	■	■	■		
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소요 내부발굴 및 외부 모니터링		■	■	■	■
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등 교육·홍보방안 마련			■	■	■
마. 타 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방안 연구				■	■
바. 최종 보고서 작성					■
보고 및 자문회의	(상시)				

* 용역 추진여건에 따라 수행일정 변경 가능

첨부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기일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과업종료 3개월 이전	10부
최종보고서	과업종료 이전	30부

※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와 CD로 제출함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PDF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 (포인트 13,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A3는 A4용지 2매로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요청서 문의

- 문 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연락처 : 044-201-4596

마.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VII. 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VIII.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비고
1	기관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 참여 연구인력(석, 박사 등) 현황 	계량평가	주1)
2	투입인력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경영관리 분야의 제도/정책/기술 관련 연구수행 연수(책임연구원 등) 	계량평가	주2)
3	신용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계량평가	주3)
4	과업접근방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연구성과도출 방향 	비계량평가	주4)
5	과업수행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주4)
6	기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에 대한 이해정도 및 제안요청서(지침) 등 수행 필요사항 반영도 종합평가 	비계량평가	주4)
계					

주1) 기관평가(계량평가(10))

- 기관예산규모(3)

구 분	15억 초과	15억~10억 이상	10억 미만~7억 이상	7억 미만
배 점	3	2.7	2.4	2.1

※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기준

-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7)

구 분	10인 초과	7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배 점	7	6	5	4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제도·정책기술 관련분야 전공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주2) 투입인력평가(계량평가(10))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10	9	8	7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으로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과 관련분야 연구년수

주3) 신용도(계량평가(5))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로 평가(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징계회수 : 0회(5), 1회(4.5), 2회(4), 3회 이상(3.5)

주4) 과업접근방식 등(비계량평가(75))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 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 접근방법	30	30	25	20	15	10
과업 수행계획	30	30	25	20	15	10
기타	15	15	12	9	6	3

※ 유의사항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 주1), 주2), 주3)은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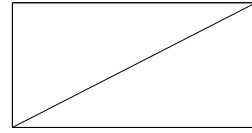
나.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제안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
2. 서약서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4.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5. 용역(연구) 수행실적
6.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7. 보안서약서
8. 청렴서약서

<양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업체명 : (인)

<양식 2>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양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0년	2019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4>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5>

용역 (연구) 수행실적

건 명	개 요	수주금액	발주처	계약일	비 고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연구진(책임연구원 등)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 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
3. 서약서(서식 2 활용)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3 활용)
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서식 4 활용)
6. 용역(연구) 수행실적 (서식 5 활용)
7.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서식 6 활용)
8. 보안 및 청렴 서약서(서식 7, 8 활용)
9.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